의안번호	2220359
의 뢰 인	김영환 의원
회 답 일	2026. 8. 5.
추계번호	26F38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 대상 확대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5조의6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분야 확대, 명칭 변경 – 분야: (현행) 영상콘텐츠(영화, TV방송, OTT) 분야 (개정안) 간행물 추가 – 명칭: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	안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분야: (현행) 영상콘텐츠(영화, TV방송, OTT) 분야 (개정안) 간행물 등 문화콘텐츠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의6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25조의6)

❑ 현행법 제25조의6은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동 제도는 2017년 도입 이후 공제대상 확대, 공제율 상승 등을 중심으로 개정

- 현행 기업규모별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공제율은 추가공제율 포함 20~30% 수준

  ※ 공제율(기본+추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20%

- 적용기한: 2028. 12. 31.

[표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시행시기	주요 개정내용
2017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2022년	□ 공제대상에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포함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국내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024년	□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도입 - 공제율: (기본공제) 중소기업 10 →15%, 중견기업 7→10%, 대기업 3→5% (추가공제)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추가공제 10%(중소기업 15%) 적용
2025년	□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 - 공제율: (기본공제) 대기업 5→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99억원에서 2024년 258억원으로 증가

- 단, 2024년 실적은 2023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본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도입의 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의 실적

[표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실적: 2020~2025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99	170	309	320	258	253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은 공제대상 콘텐츠 범위를 현행 영상물에서 간행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향후 공제대상 제작비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25조의7)

❑ 현행법 제25조의7은 문화산업전문회사[1]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에 출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3%를 법인세에서 공제

○ 동 조항은 2023년 말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됨

○ 공제대상: (현행) 영상콘텐츠 → (개정안) 문화콘텐츠

[표 3]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내국법인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공제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기한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2028.12.31.까지 출자한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시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현재 세액공제 실적이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 동 조항은 2024년 이후 출자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공제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하며,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을 사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2025년 감면실적이 추정곤란으로 제시됨

1) 문화산업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동시에 해산하며 프로젝트의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다.

○ 또한 개정안은 공제대상 콘텐츠 범위를 현행 영상컨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향후 공제대상 제작비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